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6-290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국유재산법 제32조(사용료)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서를 2회 등기송달 하였으나,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1. 제　　목: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
2. 근거법규
   가. 국유재산법 제32조
   나. 국세기본법 제11조
   다.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
   라.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
3. 공고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4. 공고대상자 및 내역(2016. 11. 22.현재)

체 납 자			체 납 내 역	
징수결의번호	성 명	주 소	부과금액	징수 과목명
190110354867 외 1건	유영*	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24 **	95,060	건물대여료 가산금 등

5. 공고기간 내에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,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**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[☎(031)8014-3273]**로 문의 바랍니다.

2016년 11월 22일

경 인 지 방 우 정 청 장